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08
----------	------

2019년 8월 23일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8.21. 박순규 의원 외 109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9.8.22.

다. 상정 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19년 8월 2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 주력상품의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고, 이어 일본과의 수출협력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백색국가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침략에 나섰다.
-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WTO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하고 보복적 성격의 경제침탈로, 경제협력과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와 국제 규범 및 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경제침략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최근 일본 정부의 첨단 소재부품 수출제한, 백색국가 제외 등 보복성 조치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제규범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행위임.
- 이에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경제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서울시 등이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며, 일본에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됐음.<sup>1)</sup>

### 2 결의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동 협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1) 이와 관련해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는 결의안 채택,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및 규탄 대회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

판단한 것임.

-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주일 한국대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볼 때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를 번복했다며 반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
- 먼저,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함.
- 이어, 8월 2일에는 아베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현재는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위안부 등 역사·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한일관계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정·경분리 원칙이 유지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對한국 수출규제 등 일련의 조치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과 동시에 양국의 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퇴보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서울특별시의회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보복 조치 등 일련의 경제 침략적 보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와 외교적 해결 촉구 ②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 존중과 사과 및 배상 이행 ③ 정부와 서울시 등에 수출규제

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 보호,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엄중하고 적극적인 대응 등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일본 정부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래 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피해자 배상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죄와 즉각적인 배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와 서울시는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엄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3 종합 의견

- 본 결의안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련의 보복성 조치는 한일우호관계 훼손과 경제적 악영향은 물론, 자유무역질서 퇴보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 보복행위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정부와 서울시는 일본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 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일본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1008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1일

발 의 자 : 박순규, 김용석, 신원철, 서윤기,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수규,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봉양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 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 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김소영, 권수정,  
김진수, 김소양, 성중기, 여 명,  
이석주, 이성배 의원 (110명)

##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일본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며 일본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함.

## 2. 제안이유

-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 주력상품의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고, 이어 일본과의 수출협력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백색국가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침략에 나섰다.
-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WTO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하고 보복적 성격의 경제침탈로, 경제협력과 우호관계의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와 국제 규범 및 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경제침락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3. 이 송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의 주력상품인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생산에 사용되는 3가지 전략품목의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일본과의 수출협력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백색국가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침략에 나섰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 6월 오사카 G20정상회담을 주최한 의장국으로서 일본이 스스로 언급한 자유무역주의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세계 정상들이 모여 합의를 이뤄낸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 규범과 무역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한 WTO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하고 보복적 성격의 경제침탈로써 국가 간 경제협력과 우호관계를 훼손하여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행위로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일본과의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했으나 일본은 번번이 사실왜곡과 거부로 일관해왔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의 WTO 심의 승소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해상 자위대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을 하는 등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세를 통해 우리 정부를 수차례 모욕해왔다.

이번 기습적인 경제침략 역시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의 만행을 되풀이하는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결국 아베 총리의 숙원인 평화헌법 폐기를 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이뤄내어 한반도 평화를 저지하고 동북아 평화안보를 위협하며 패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양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본의 경제 보복규제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일제 식민지배에 항거한 민중들이 조국과 민족의 독립

을 외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3.1운동 100주년에 벌어진 일본의 경제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 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서울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래 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피해자 배상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죄와 즉각적인 배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와 서울시는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엄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 8.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